

1.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에 따라 매년 철강·카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중으로,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‘25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·의결하고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의 안전운송원가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의 안전운송원가를 고시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 없음

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

1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
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

가. 월 단위 차주 원가

(단위 : 원/월)

품목	고정원가	변동원가	합계
철강재	2,961,423	4,311,703	7,273,126

* (고정원가항목) 차량감가상각비, 차량구입금융비, 보험료, 번호판부착비, 지입료, 자동차세, 정기검사비, 환경개선부담금, 단체·협회비, 세무신고비, 통신비, 차고지 및 주차비, 숙박비, 사회보험료, 출퇴근비, 정보망이용료

** (변동원가항목) 주연료비, 통행료,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, 타이어비, 세차비, 기타 소모품비

나. 1km 단위 차주 원가

(단위 : 원/km)

품목	단위 원가
철강재	936

다. 차주 운송정보

(단위 : km/월, 건/월, 일/월)

품목	월 운송거리	월 운송건수	월 운송일수
철강재	7,769	39.6	21.5

2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

가. 월 단위 차주 원가

(단위 : 원/월)

품목	고정원가	변동원가	합계
1톤 일반형 화물차	915,275	782,855	1,698,130
5톤 일반형 화물차	1,486,131	1,965,004	3,451,135
12톤 일반형 화물차	2,360,985	3,570,897	5,931,882
25톤 일반형 화물차	2,809,933	4,336,683	7,146,616

* (고정원가항목) 차량감가상각비, 차량구입금융비, 보험료, 번호판부착비, 지입료, 자동차세, 정기검사비, 환경개선부담금, 단체·협회비, 세무신고비, 통신비, 차고지 및 주차비, 숙박비, 사회보험료, 출퇴근비, 정보망이용료

** (변동원가항목) 주연료비, 통행료,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, 타이어비, 세차비, 기타 소모품비

나. 1km 단위 차주 원가

(단위 : 원/km)

품목	단위 원가
1톤 일반형 화물차	421
5톤 일반형 화물차	493
12톤 일반형 화물차	733
25톤 일반형 화물차	777

다. 차주 운송정보

(단위 : km/월, 건/월, 일/월)

품목	월 운송거리	월 운송건수	월 운송일수
1톤 일반형 화물차	4,030	49.7	22.1
5톤 일반형 화물차	6,999	37.3	22.2
12톤 일반형 화물차	8,096	32.3	22.4
25톤 일반형 화물차	9,200	26.6	21.9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대상 안전운송원가 부대조항

1.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어음수수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비 정산 방식으로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.
2. 차량구입비 외 화물운송에 필요한 장비 및 구조변경(유압기, 가변기, 윈바디, 내장탑, 냉동·냉장 장치, 리프트 장치 등)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.
3. 주연료비는 운송차량의 실제 연비와 유가¹⁾를 참고하여 실제 운송 거리에 따른 비용을 운임협상 시 협의할 수 있음.
4.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주선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.
5.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.

1) '24.9.1.~'24.11.30. 평균 1,446.62원(한국석유공사 공시 국내 주유소 자동차용 경유 판매가격(부가세포함))